

자유회전정기예금 특약

제1조 특약의 적용

자유회전정기예금(이하 '이 예금'이라 한다.) 거래에는 이 특약 및 예금거래기본약관, 거치식 예금약관을 적용한다.

제2조 거래대상자

이 예금의 거래대상자는 제한을 두지 않는다.

제3조 약정기간

이 예금의 약정기간은 20년으로 한다.

제4조 가입 최저한도

이 예금의 가입 최저한도는 100만원 이상으로 한다.

제5조 회전주기 및 변경

- ①이 예금의 회전주기는 3월, 6월, 12월로 할 수 있다. 다만, 세금우대종합저축으로 개설하는 경우 최초 회전주기는 12월로 하여야 한다.
- ②매 회전주기 종료일까지 회전주기 및 이자지급방법을 변경할 수 있으며, 변경내용은 새로이 시작되는 회전주기부터 적용한다.
- ③회전주기 변경으로 마지막 회전기간이 만기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만기일 까지 잔여기간에 해당하는 이율을 적용한다.
- ④회전종료일과 이자지급일의 회전기준일은 최초 신규거래일로 하며, 회전종료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도 회전기준일은 변경되지 아니한다.

제6조 이 자

- ①이 예금의 이자는 신규(재예치)거래일 현재 고시된 회전기간에 해당하는 정기예탁금 약정이율을 적용하며, 회전주기별로 이자를 정산한다.
- ②회전주기 종료일 이전에 해지하는 경우에는 신규(재예치)거래 당시 고시된 정기예탁금 중도해지 이율을 적용한다.
- ③만기 후 이자는 만기 후 1월까지는 정상이율의 2분의 1을 적용하고, 만기 후 1월 이후부터는 온라인보통예탁금 이율을 적용한다.
- ④이 예금의 이자 지급은 예금주가 지정하는 입출금이자유로운예금으로 자동이체 한다. 다만, 만기 후 이자는 거래자의 원금청구 시 원금과 함께 일시에 지급한다

제7조 계좌분할

이 예금은 계좌를 분할할 수 있다. 다만, 분할된 계좌는 각 100만원이상 이어야 한다.

제8조 세금우대의 적용

이 예금은 세금우대저축, 생계형저축, 세금우대종합저축으로 가입할 수 있다.

제9조 준용규정

이 특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정기예탁금 업무처리방법을 준용한다.